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9. 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30호로 2013년 8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으로 뉴타운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조례의 제정  
목적 또한 달성되면서 기존 조례운영이 형식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5일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전부 전환되었고, 또한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기에 관련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참고로 향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은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조례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